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10107 취득세경정거부취소
원 고	A조합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7,406,3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6. [redacted] [redacted]시 B 답 4,000㎡ 중 1/2 지분 및 C 답 1,818㎡ 중 446/1818 지분(이하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매매대금 합계 511,9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농지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의 '[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15,358,500원, 지방교육세 1,023,900원, 농어촌특별세 1,023,900원(이하 이를 '취득세등'이라 한다) 합계 17,406,300원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지를 실사한 후 원고에게 '위 농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서 감면된 취득세등을 자진 신고, 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0. 위 취득세등을 자진신고하고 2017. 5. 24. 취득세등 합계 17,406,3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 신고액을 '17,406,300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위 신고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6. [redacted]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18. 기각되자 다시 2019.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청구도 2019.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당초 육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다시 시범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경 예산안을 수립하고 2017. 2.경 경지정리, 배수로 정비를 하였으며 2017. 4. 14. 증식포(시범포)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D로 하여금 2017. 5. 시범포를 파종하여 수확하는 등 취득세 감면기간 내에 위 농지를 시범포 운영에 직접 사용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세 감면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농지의 다른 지분소유권자들 및 인근 부지 소유권자들의 부당한 매도 거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기납부 취득세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농지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원고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14조 제3항에서 [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감면 요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1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취득일부터 1년 내(2016. 4. 26.부터 2017. 4. 26.까지)에 시범포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redacted]시는 2016. 3. 16. 원고에게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벼 육묘장, 1,320㎡(660㎡ × 2동), 사업비 320,000,000원] 을 승인한 후 2016. 11. 3.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벼육묘장 설계서 및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0.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redacted]시로부터 보조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량 1,320㎡/1동, 사업장소 [redacted]시 B 외 3필지, 사업기간 2017. 3. 31., ...(중략)... 벼 자동화 육묘장 준공 2017. 3.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농지([redacted]시 B, C 일부 지분)를 육묘장에서 제외하여 시범포로 이용하겠다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구나, [redacted]시는 원고에게 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6호증), 원고가 2016년 11월경 [redacted]시에 위 육묘장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축소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시장의 승인을 받으려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위 농지에 인접한 [redacted]시 E 답 1,346㎡도 함께 취득하였다가 2017. 11. 이후에야 당초 계획된 육묘장의 규모를 축소하여 위 E 토지에만 육묘장을 설치하였다)[1].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이후인 2017. 4. 14.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식포(시범포) 운영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위 시범포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작성되어 실제 실행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농지 담당직원(5급 F)의 출장복명서에는, 위 직원이 2016년 12월경까지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동의 문제로 출장을 갔다는 내역이 있을 뿐,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시범포운영을 위하여 출장을 갔다는 내역은 없고, 2017. 5. 8. 위 농지의 공유지분경계부분설치를 위한 출장내역, 2017. 5. 8. 자경관련 업무를 위한 출장내역, 2017. 5. 30. 부지현장점검을 위한 출장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D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원고의 허락 하에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원고에게 2016년도 농지 임대료 39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그 이듬해인 2017년도에도 연속하여 자신의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설령 2017. 4. 26. 이전에 D가 위 농지에 농사를 위한 로터리작업 등 일부 농사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가 위 시점 이전에 위 농지를 원고의 시범포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1)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16년 11월에 이 사건 농지를 시범포 용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이 점만으로 위 농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갑 제23, 24호증의 각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D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자신이 논수(경작비)를 주고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고, 위 녹취파일의 내용만으로는 D가 2017년 초경부터 원고로부터 시범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농사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가 2017년도에 작성한 시범포 운영일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7년 상반기에 원고가 D에게 경작준비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원고는 2017년 4월경에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스스로 직접 시범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D로 하여금 원고 대신 농사를 짓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D가 원고 대신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0.에 이 사건 취득세등을 신고하고 2017. 5. 24. 취득세등을 직접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11월경에 이미 이 사건 농지를 시범포로 전환하였다'는 등 위 취득세등 납부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바 없다.

2) 이 사건 농지가 유예기간 안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취득 시에 이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일부 지분만을 취득한 상태였고, ■■시 C 토지의 경우에는 446/1818 지분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완전한 육묘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농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원고가 사전에 위 농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일정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위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위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1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위 농지에 육묘장을 설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실제 위 유예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도 지분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사전에 인지한 위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유예기간 안에 위 육묘장 사업에 위 농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원고는 2016. 11. 10. [redacted]시에 육묘장 관련 보조금 신청을 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사업부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은 2016. 12. 9.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2016. 12. 9.까지'로 기재하여 두었는바, 원고가 2016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농지의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예정한 육묘장 사업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이 사건 농지를 2014. 4. 26. 이전에 충분히 시범포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환수고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위 농지를 시범포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07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redacted]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